

「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11월 14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25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51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19년 11월 27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도시주택과장)

### 가. 제안이유

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권고사항 등의 반영으로 평창군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, 지역경관을 통합적·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#### 가. 경관사업의 대상 기준 마련 (안 제10조)

- 도시경관의 기록화, 디자인 개선, 수변공간 등의 경관 개선을 위한 기준을 정함

#### 나.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확대(안 제26조)

- 상위법령 개정 사항의 미반영 부분에 대한 경관심의 기준을 정함.
- (추가)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도로시설, 철도시설, 도시철도, 하천시설 사업
- (추가) 사회기반시설 중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100억 원 이상의 사업

다.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완화 및 확대(안 제27조)

- (추가)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제외
- (변경)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(연면적 2,500제곱미터 → 2,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)
- (변경)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,000(기존 660)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(증축 포함)
- (추가)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

라. 재·개정된 법령에 맞게 내용 수정 및 삭제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권고사항 등의 반영으로 평창군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, 지역경관을 통합적·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개선·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,

- 주요 개정내용으로는

####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감심의 대상에

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도로시설, 철도시설, 도시철도, 하천시설 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중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추가규정하며

####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하여서는

중점경관관리구역인 평창읍 시가지, 대관령면 시가지에 대하여 기존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,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서 5층 이상 건축물로 심의 대상 건축물을 완화 규정, 평창 봉평 레저·문화창작 특구 내 문화창작 지구에 대하여

기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서  
연면적 2,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

각각 심의 대상 건축물을 완화 규정하였습니다.

○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##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경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경관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법 제7조”를 “「경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”로 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경관계획수립권자·사업자·군민의 책무)”를 “(경관계획수립권자·사업자의 책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안서에 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제8조제3호 중 “경관지구, 미관지구, 등 특정경관관리구역”을 “경관지구 등 경관관리구역”으로 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10조제4호를 제2호로 하고, 제10조제1호를 제4호로 하며, 제10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제10조제2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조에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호(종전의 제2호)

중 “**군내 주요공간**”을 “**도시의 주요 공간**”으로 하며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호(중전의 제4호) 중 “**공공시설물 및 공공구조물**”을 “**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**”로 하며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
3. 하천, 호수 등 수변공간의 경관개선 사업
5.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경관시범사업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호의 사항을 말한다**”를 “**호와 같다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“**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**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12조제1호부터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 외의 부분 제4호 및 각 호 외의 부분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경관계획과의 연계성
2.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
3.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
4.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
5.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

제13조의 제목 “(**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**)”을 “(**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**

성·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따른**”을 “**따른 평창군**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**군민단체**”를 “**시민단체**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제4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

6. 그 밖에 군수가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따른**”을 “**따른 평창군**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**”를 “**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하여야 한다**”를 “**취할 수 있다**”로 한다.

제22조의 제목 “**(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)**”을 “**(경관협정에 관한 조정·지원)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23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**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**”를 “**영 제17조**”로 한다.

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영 제18조제1항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도로시설 사업, 철도시설 사업, 도시철도시설 사업(보상비 제외)

2.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(보상비 제외)

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”이란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100억원 이상(단, 용지보상비 제외)의 사업을 말한다.

제27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경관지구 건축물,

제27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「건축법」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

제27조제1호나목 중 “도시계획위원회”를 “평창군 군계획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5층 이상 건축물

나. 연면적 2,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

제27조제3호 중 “660제곱미터”를 각각 “1,000제곱미터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 5.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

제28조를 삭제한다.

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23조제5항”을 “영 제23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30조 중 “군수는”을 “군수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”로, “군수 소속 하에 평창군 경관위원회(이하”위원회”)를 설치한다”를 “평창군 경관위원회(이하 ”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”로 한다.

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3호부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3조의 제목 “(경관위원회의 구성)”을 “(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·운영한다.

제3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

한다.

1.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

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2.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는 경우

3.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·자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

4.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34조제1항 중 “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”를 “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”로, “**심의한**”을 “**심의·자문한**”으로, “**심의를**”을 “**심의·자문을**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·자문 안건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심의·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.

**제35조를 삭제한다.**

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**「평창군 도시계획 조례**」”를 “**「평창군 군계획 조례**”로, “**군계획위원회의**”를 “**군계획위원회**”로 한다.

이 경우 심의내용에 건축, 도시, 조경, 공공디자인, 야간경관 등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.

제36조의2를 삭제한다.

제37조를 삭제한다.

제38조를 제39조로 하고,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(준용) 이 조례에 정하는 바 이외의 수당 및 회의 방법 등 절차에 관해서는 「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관 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## 경관 심의(자문) 신청서

신청인	상 호(명 칭)		사업자등록번호	
	성 명(대표자)			
	주 소(사무실)	( ☎ )		
	설 계 자 (사무소명/대표자)	/		
사업구분	구 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 <input type="checkbox"/> 변경		
	사업명/기간	/		
	대상시설/면적	/		
	사업위치			
신청내용				
「평창군 경관조례」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 심의(자문)를 신청합니다.				
년 월 일				
신청인 : (서명 또는 날인)				
<b>평창군경관위원회위원장 귀하</b>				
구비서류				
1. 경관형성 계획서				
2. 계획도면				
3. 조감도 및 사업추진 전·후 대비 시뮬레이션				
4.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(필요한 경우에 한정함)				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경관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및 평창군의 우수한 자연 경관을 보존하고, 지역경관을 통합적 ·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 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경관계획"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 전 ·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, 관할구역 전체 또 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.</p> <p>2. ~ 6. (생략)</p> <p>제3조(경관관리의 기본방향) 평창 군(이하"군"이라 한다)의 경관 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 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 으로 하며, 천혜의 자연자원과 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 경관을 형성하고 군민의 삶의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경관법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「경관법」 (이 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경관관리의 기본방향) &lt;삭 제&gt;</p>

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.

제4조(경관계획수립권자·사업자·군민의 책무) ①·②(생략)  
③ 군민은 지역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) ① 「경관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- ② ~ ④ (생략)
- ⑤ 군수는 제2항에 의한 검토사항 및 경관계획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6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하고, 경관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사항을 게재한다.

제8조(경관계획의 내용) 법 제9조 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

제4조(경관계획수립권자·사업자의 책무) ①·②(현행과 같음)  
<삭 제>

제7조(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다음 -----  
-----  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 <삭 제>

제8조(경관계획의 내용) -----  
-----

전·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·2. (생략)

3. 경관지구, 미관지구,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

4. ~ 8. (생략)

제10조(경관사업의 대상)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<신설>

1. (생략)

2. 군내 주요공간 및 시설물 설치·관리를 위한 경관사업

3. 수변공간 및 주요 하천 변의 경관 개선사업

4. 공공시설물 및 공공구조물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한 사업

5.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및 옥외광고물 정비사업

6. (생략)

제11조(경관사업계획서) 영 제8조

-----  
-----  
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경관지구 등 경관관리구역-----  
-----

4. ~ 8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경관사업의 대상)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

4. (현행 제1호와 같음)

6. 도시의 주요 공간-----  
-----

3. 하천, 호수 등 수변공간의 경관개선 사업

2.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-----  
-----

5.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경관시범사업

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제11조(경관사업계획서) -----

제1항제7호에서 "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~ 5. (생략)
6. 그 밖에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평창군 경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

제12조(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)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
2.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
3.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

<신설>

<신설>

제13조(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)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

-----  
-----  
----- 호와

같다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12조(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)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"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경관계획과의 연계성
2.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
3.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
4.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
5.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

제13조(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·운영) ① ----- 따른 평창군 -----

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(생략)
2. 군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3. (생략)
4. 경관사업 시행자

<신설>

5. (생략)
6. 지방의회 의원

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「여성발전기본법」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③ ~ ⑨ (생략)

제14조(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)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2. (생략)

제15조(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)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

-----  
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시민단체-----
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<삭제>

5.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

3. (현행 제5호와 같음)
6. 그 밖에 군수가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) ----- 따른 평창군 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) ① -----

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 
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 
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  
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  
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「평창군  
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 
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  
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22조(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  
원) ①·② (생략)

<신설>

제23조(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  
원) ①·② (생략)

③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  
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  
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 
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

-----  
----- 비용을 지원할 수  
있다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취할 수 있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경관협정에 관한 조정·지  
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  
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  
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 
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  
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·  
시행할 수 있다.

제23조(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  
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25조(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 계획서) ① (생략)

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

제26조(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) 법 제26조 제1항제5호에 따른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1항 중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20억 이상(단, 용지보상비 제외) 사업의 시설을 말한다.

<신 설>

제25조(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 계획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영 제17조-----  
-----  
-----.

제26조(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) ① 영 제18조제1항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도로시설 사업, 철도시설 사업, 도시철도시설 사업(보상비 제외)

2.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(보상비 제외)

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”이란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100억

제27조(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)  
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 
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 
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건  
축물, 다만, 다음 각목의 건축  
물은 제외한다.

가. 연면적이 200㎡미만 또는  
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

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
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2조  
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  
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

2.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 
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

가. 평창읍 시가지, 대관령면  
시가지 : 5층 이상 또는 연  
면적 2,500 제곱미터 이상  
의 건축물

나. 평창 봉평 레저·문화창  
작 특구내 문화창작지구 :  
3층 이상 또는 연면적 230  
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

3.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

원 이상(단, 용지보상비 제외)의  
사업을 말한다.

제27조(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)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경관지구 건축물, -----  
----.

가. 「건축법」 제14조에 따  
른 신고대상 건축물

나. -----  
-----  
----- 평창군  
군계획위원회 -----

2. -----  
-----

가. 5층 이상 건축물

나. 연면적 2,000제곱미터 이  
상 건축물

3. -----

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(증축으로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 포함)

4. (생략)

<신설>

제28조(경관과 관련된 위원회)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”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」 제30조3항 및 시행령 제25조2항 규정에 따른 평창군 도시·건축 공동위원회를 말한다.

제29조(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- 1. ~ 5. (생략)
②·③ (생략)

제30조(경관위원회 설치) 군수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군수 소

----- 1,000제  
곱미터 -----  
----- 1,000제곱미터 -----  
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5.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 연습장

제28조(경관과 관련된 위원회) <삭제>

제29조(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영 제23조제6항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- 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경관위원회 설치) 군수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-----  
----- 평창군

속 하에 평창군 경관위원회(이하 "위원회")를 설치한다.

제31조(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)  
(생략)

<신설>

제32조(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)  
영 제24조제3호에서 “지방자치  
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  
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2. (생략)
3. 군수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 
경관형성에 관한 사항
4. 군수의 인·허가 등을 받아  
야 하는 사업으로서 군수가  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 
경관형성에 관한 사항
5.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외  
형 디자인 및 단지 내 경관계  
획에 관한 사항
6.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필  
요한 경관을 고려한 각종계획  
· 개발기준 수립 내용

7. 8. (생략)

경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  
다)를 둔다..

제31조(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)  
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 
음)

②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려는  
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 
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2조(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)  
① -----  
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7. 8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33조(경관위원회의 구성)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 회의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소집 운영한다.

② (생략)

③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.

1. 군의회 의원

2. 3. (생략)

④ (생략)

<신 설>

②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3조(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·운영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

제34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제35조(경관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

려운 경우

2.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는 경우

3.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·자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

4.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34조(소위원회) 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-- 심의·자문한 -- -- 심의·자문을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·자문 안건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심의·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.

제35조(경관위원회의 운영) 삭제

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그 직계가족이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.

④ 군수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,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·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,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.

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·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⑦ 경관위원회의 심의·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, 군

수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·조사·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,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⑧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.

제36조(심의 의제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 <후단 신설>

1. 「평창군 도시계획 조례」에 의한 평창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

2. ~ 5. (생략)

② (생략)

제36조의2(수당 등)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

제36조(심의 의제 등) ① -----

-----

----- . 이 경우 심의내용에 건축, 도시, 조경, 공공디자인, 야간경관 등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.

1. 「평창군 군계획 조례」-----  
----- 군계획위원회 ---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6조의2(수당 등) <삭제>

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 
과 여비를 지급한다. 다만, 관계  
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 
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 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7조(경관을 위한 경고) ① 군

수는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 
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도  
경관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  
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 
인·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사  
항이 경관형성에 부적합하다고  
인정될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 
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  
에게 권고할 수 있다.

③ 군수가 제2항에 따라 사업자  
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였음  
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  
는 경우 「경관법」 및 「자연환  
경보전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 
입목벌채, 토지형질변경 등의  
인·허가 또는 출입·취사·야  
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이미 완료된 사업장  
(건축물·시설물, 사업부지 등

제37조(경관을 위한 경고) 삭제

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 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(건물 등 소유자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경관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, 30일 이내에 경관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경관개선을 권고 받은 사업자가 경관개선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⑥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경관개선을 권고 받은 사업자가 경관개선 권고에 불응하여 경관개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사업 대상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38조 (생략)

제38조(준용) 이 조례에 정하는 바 이외의 수당 및 회의 방법 등 절차에 관해서는 「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9조 (현행 제38조와 같음)